

## ●환경부공고 제2024-679호

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2일

환경부장관

###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개정(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-34호, '24.8.30.)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(1군·2군·면제)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

#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(10종)
- 나.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변경 및 물질식별번호(CAS번호) 추가 등 화학물질명 변경사항 반영(2종)
- 다. 재검토기한 재설정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국민소통→국민참여→전자공청회)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- 전자우편 : [hongsyong@korea.kr](mailto:hongsyong@korea.kr)
- 팩 스 : (044) 201 - 6830
-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)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국민소통→국민참여→전자공청회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